

의안 번호	1605	【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 돌봄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】 심사보고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20. 2. 11.(화)
- 나. 제출자 :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0. 2. 11.(화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0. 2. 20.(목)

2. 제안설명 요지(복지경제국장 김영성)

가. 제안이유

-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 돌봄체계 구축 및 공동체 기반 조성을 통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설치한 다봄행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하고자,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위탁운영 현황

시설명	위치	시설면적	위탁기간
울산 중구 다함께 돌봄행복센터	중구 종가 3길 15 (유곡동) 중구종합사회복지관 4층	306.49㎡	2020. 3월 ~ 2022. 3월(2년)

- 위탁내용

- 울산 중구 다함께 돌봄행복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
- 그 밖에 울산 중구 다함께 돌봄행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

다. 근거법규

-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 제3항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유경달)

- 본 위탁 동의안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 사회 중심의 아동 돌봄 체계 구축 및 공동체 기반 조성을 통해 틈새 돌봄 기능 강화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운영하는 다봄행복센터를 사회복지 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,
 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거법규

「아동복지법」

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"방과 후 돌봄서비스"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,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

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의 시설관리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관계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동의권을 얻어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